

▣ **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방법**

서류제출 기한	2021년 1월 9일(토) ~ 1월 16일(토) 17시 도착분까지 (반드시 지정된 기간내 서류를 접수하시길 바랍니다.)
제출방법	건본주택 방문접수
수신처	경상북도 구미시 신평동 301-15 (대표번호 054-443-1000)
유의사항	·신중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미착용자 및 체온 37.5도 이상 고객은 방문이 불가합니다. · 기한 내에 아래 자격서류를 발급하시어 건본주택 방문 후,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·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점을 취소하며, 부적격 당점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▣ **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제출 서류**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 확인서류	○		신분증	본인	·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·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(뒷자리 포함), 과거주소 변동사항, 세대구성,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·주민등록번호 (뒷자리 포함), 과거주소변동사항 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성명,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	피부양 직계존속		·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(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) ·주민등록번호 (뒷자리 포함), 과거주소 변동사항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	
	○		인감증명서	본인	·용도에 「아파트 계약용」으로 직접 기재(반드시 본인발급용으로 발급진행)
	○		인감도장	본인	·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·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(본인 직접 계약에 한함)
	○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·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, "상세"로 발급
		피부양 직계존속		·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번호 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, "상세"로 발급	
	○		출입국 사실 증명원	본인	·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 또는 거주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※ 발급기간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발급 (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)
		피부양 직계존속		·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거주기간 확인 필수 ※ 발급기간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 발급 (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)	
		피부양 직계비속		·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거주기간 확인 필수 ※ 발급기간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발급 (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)	
	○	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·만 30세 이전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·본인 및 배우자 성명, 주민등록번호 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, "상세"로 발급
		피부양 직계비속		·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·주민등록번호 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, "상세"로 발급	
○	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·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·주민등록번호 (뒷자리 포함)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	
○	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비속	·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(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) ·주민등록번호 (뒷자리 포함), 과거주소 변동사항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	
○		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	·배우자의 전혼자녀 확인 시(본인의 주민등록표 상 등재된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)	
부적격 통보를 받은자	○		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		·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(가옥대장등본 포함)
	○		무허가건물확인서		
	○		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		
	○		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	

- ※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0.12.18(금)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전체)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.
- 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각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※ 특별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(검증)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표 등·초본, 가족 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문의. 054)443-1000